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 응봉대림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2023. 4.

성 동 구 [주거정비과]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연 락 처 (팩스번호)	e-mail
민지영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계획팀)	성동구청 11층	02-2286-6577 (FAX 02-2286-6916)	minjy0218@sd.go.kr

1. 용역개요

- 가. 용역명 : 응봉대림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
응봉대림1차 아파트	성동구 독서당로 62길 43 (응봉동 100)	109,360.78㎡ (12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5층	976세대	1986.10.23.

- 2) 용역범위 :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과업내용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83,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5월 중(PC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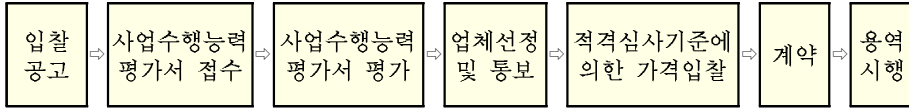
2.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1)~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2-29호, 2022.4.25.)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선정절차



4. 입찰 참가자격자 선정방법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별표4)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053호(2023.4.13.)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점수로 인하여 15개 업체 이상이 선정될 경우 동점자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 나. 낙찰자 결정
-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	심사항목	해당용역 수행능력	책임기술 자경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 보유현황	계약질서 준수
100		34	1	3	2	60	△10	△1

- ※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 경영상태(2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6. 용역 참가신청서 및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년 05월12일(금) 09:00 ~ 18:00

※ 12시~13시 접수 불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찰공고문 확인요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11층)

다.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1부)
- (2)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 : 1식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7.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오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8.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1)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 부 평 가 요 소	배 점
총 계			100
참여기술인 (45점)	소 계		45
	사업책임기술인(18점)	• 경 력	8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18점)	• 등 급	2
		• 경 력	6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9점)	• 등 급	2
		• 경 력	3
		• 유사용역실적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용역을 준공한 실적	• 용역수행 건수	12
		• 용역수행 금액	13
신 용 도 (10점)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와 평가결과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평가	4
	업무정지	• 업체, 참여기술인	3
	재정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소 계		10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개발 실적	1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 실적	1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업무중첩도 (10점)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6
	분야책임기술인		4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 단, (1)(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합니다.

9.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공통분야)

-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③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불참시 실격)

(1) 사업책임기술인 : (18점)

(가) 자격평가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8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 분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처리 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 분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2) 분야책임기술인 : (18점)

※ 분야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 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 축 분 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6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 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처리 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 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처리 함

(3) 분야참여기술인 : (9점)

※ 분야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 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3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분야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4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 분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단, 0건은 0점처리 함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1) 기준

-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도급비율에 따른 해당금액 4,000만원 이상)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다) 수행실적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라)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한 용역은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 (마)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2)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처리 함

(나) 실적금액(13점)

구 분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 단, 0원은 0점처리 함

다. 신용도【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1년간(처분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점)

- (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합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1) 개발실적(1점)

-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 까지만 인정한다.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위 (가)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산)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1-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한국건설신기술협회)

1-2.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한국발명진흥회)

(3) 투자실적(8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 【10점】

(1) 사업책임기술인(6점)

(가)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책임기술인(4점)

(가) 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0.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11.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m²)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제본순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② 목 차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⑦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⑧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⑨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서식7)

⑩ 업무정지(서식8)

⑪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⑫ 개발실적(서식10)

⑬ 투자실적(서식11)

⑭ 업무의 중첩도(서식12)

⑮ 교육이수 실적(서식13)

⑯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현황(서식14)

- 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15)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함
-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서식 및 지침

(표지서식)

접수번호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응봉대림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2023. . .(제출일)

업 체 명

【서식 1】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성동구청장	접수번호	
-------------	------	--

참 조 : 주거정비과장

제출일자 : 2023. . .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구에서 공고한 『응봉대림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붙 |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 1부. |
|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 1부. |
| | | 4.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 | 5.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 1부. |
| | |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 1부. |
| | |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 각1부. 끝.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 수 증

- 접수번호 :
- 용 역 명 : 응봉대림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 회 사 명 :
-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성 동 구 청 장(관인생략)

접수번호	
------	--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성동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성동구청장 귀하

참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3.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성동구청장 귀하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책임 기술인								
분야참여 기술인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불참시 실격)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밀안전진단	성동구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합계	건	천원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준공금액 4,000만원 이상인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평가한다.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비고
합계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주) 1.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자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불량’, ‘매우 불량’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업 무 정 지

최근 1년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또는 업체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 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2.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 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개발·활용 실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활용 실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활용 실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	2년	3년	계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㉑					
건설부문 총매출액 ㉒					
투자비율 (% = ㉑/㉒ × 100)					3개년평균치로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최근3년 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기입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 분야책임기술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잔여기간 산정은 공고일로부터 중첩 용역의 준공예정일까지 중 공고된 용역기간(90일)의 합

교육이수 실적

□ 참여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함)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을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①/②×100)	비 고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023.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참여 기 술 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신용도	계	10		
	점감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 무 중첩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책임기술인	4		
가 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

*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작성바랍니다.